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2021. 11. 2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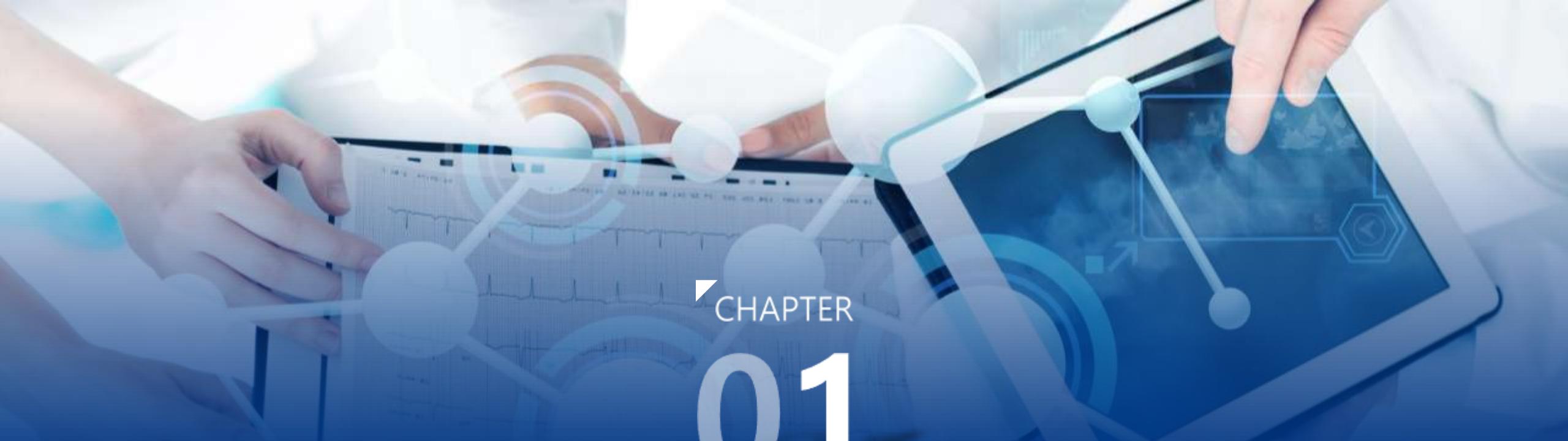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활용지원팀
박윤식



CONTENTS

- 01 가명정보 제도 소개**
- 02 가명정보 제도 개선내용 (결합 고시)**
- 0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CHAPTER

0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 제도 소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가명정보 결합제도 기반 마련

» 법령



»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 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개 정 ...

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다



가명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 근거 마련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됨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결합전문기관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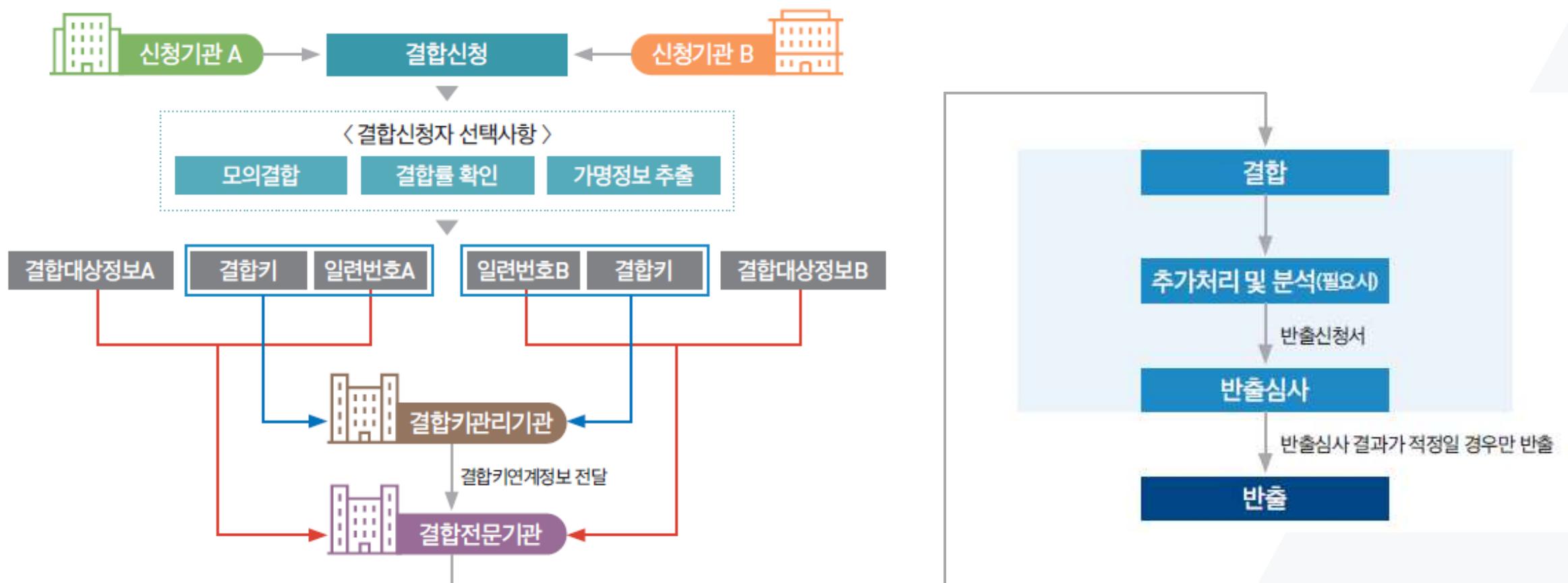


결합키관리기관

-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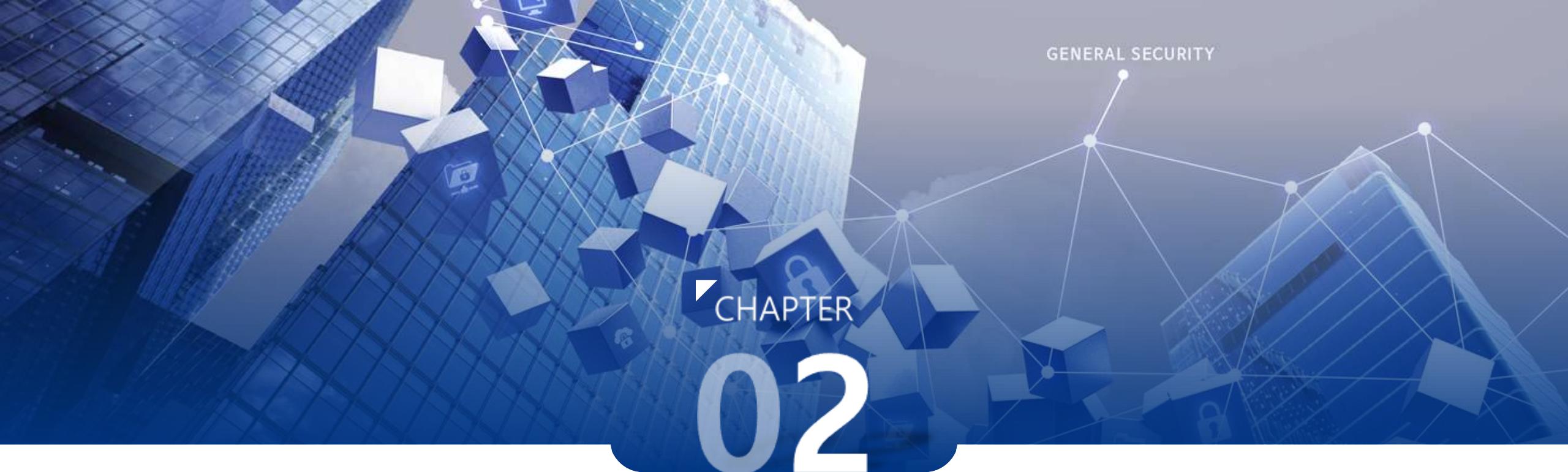


가명정보 제도 소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 결합전문기관(6개 부처, 18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6)	보건복지부(4)	국토교통부(1)	과학기술정보통신부(5)	교육부(1)	데이터전문기관
'20. 11. 27. 지정  통계청  삼성SDS '21. 6. 30.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인증 	'21. 11. 15. 지정  한국정보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 '21. 9. 1. 지정  NATIONAL CANCER CENTER	'20. 10. 29. 지정  한국도로공사	'20. 11. 24. 지정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주식회사  DOUZONE '21. 10. 6. 지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1. 1. 8. 지정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전KDN	'20. 8. 6. 지정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20. 12. 22. 지정  국세청  금융결제원
'21. 6. 1. 지정 				'21. 9. 6. 지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가명정보 제도 개선내용 (결합 고시)

전문기관 기능 · 역할 강화

01

전문기관
역할 확대
및 특화

- ▶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준 결합·반출에서 사전 가명처리, 결과분석, 컨설팅 등으로 확대



02

전문기관
지정제도
합리화

- ▶ 전문가 겸임 허용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 ▶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일부 지정요건 통일 등으로 지정절차 간소화



03

신청기관
예측가능성
제고

- ▶ 전문기관 지정 가능성을 먼저 지정부처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도입
- ▶ 조직·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를 위한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

04

가명처리 활용
과정의 절차·
기준 명확화

- ▶ 가명정보 처리·결합·반출의 절차 명확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기준 개발
- ▶ 가명처리 위험도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 결합 신청자별 첨부서류 등의 표준화된 작성례 제공



05

편리하고
효과적인
결합절차 도입

- ▶ 모의결합*, 결합대상정보 추출절차 도입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모의결합 : 가명정보 일부를 미리 결합·분석하여 결합효과 예측



06

반출 절차
간소화

- ▶ 시계열 결합의 경우 반출심사위 개최를 면제하는 등 반출절차 간소화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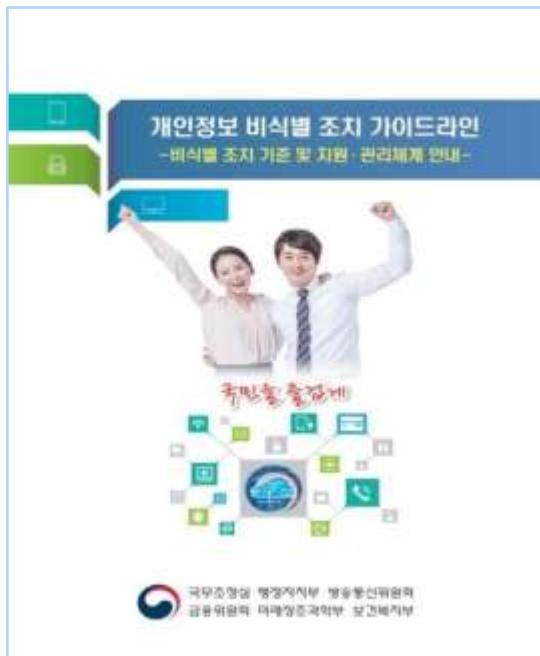
0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이력



2016. 06.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2020. 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 · 법령 ▶ 법령정보 ▶ 지침 ·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1. 10.

2021. 12. (예정)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2021. 1.



공공 분야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금융 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결합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 ▶ '21.10.5.에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절차 반영
 - 가명정보 결합 절차 구체화 등

가명처리 위험성 검토 항목 구체화

- ▶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해 위험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검토 항목을 구체화하여 반영
 - (기존) 처리(제공) 환경 검토 +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개선) 데이터 자체 식별 위험성 + 처리 환경 식별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관련 예시 및 서식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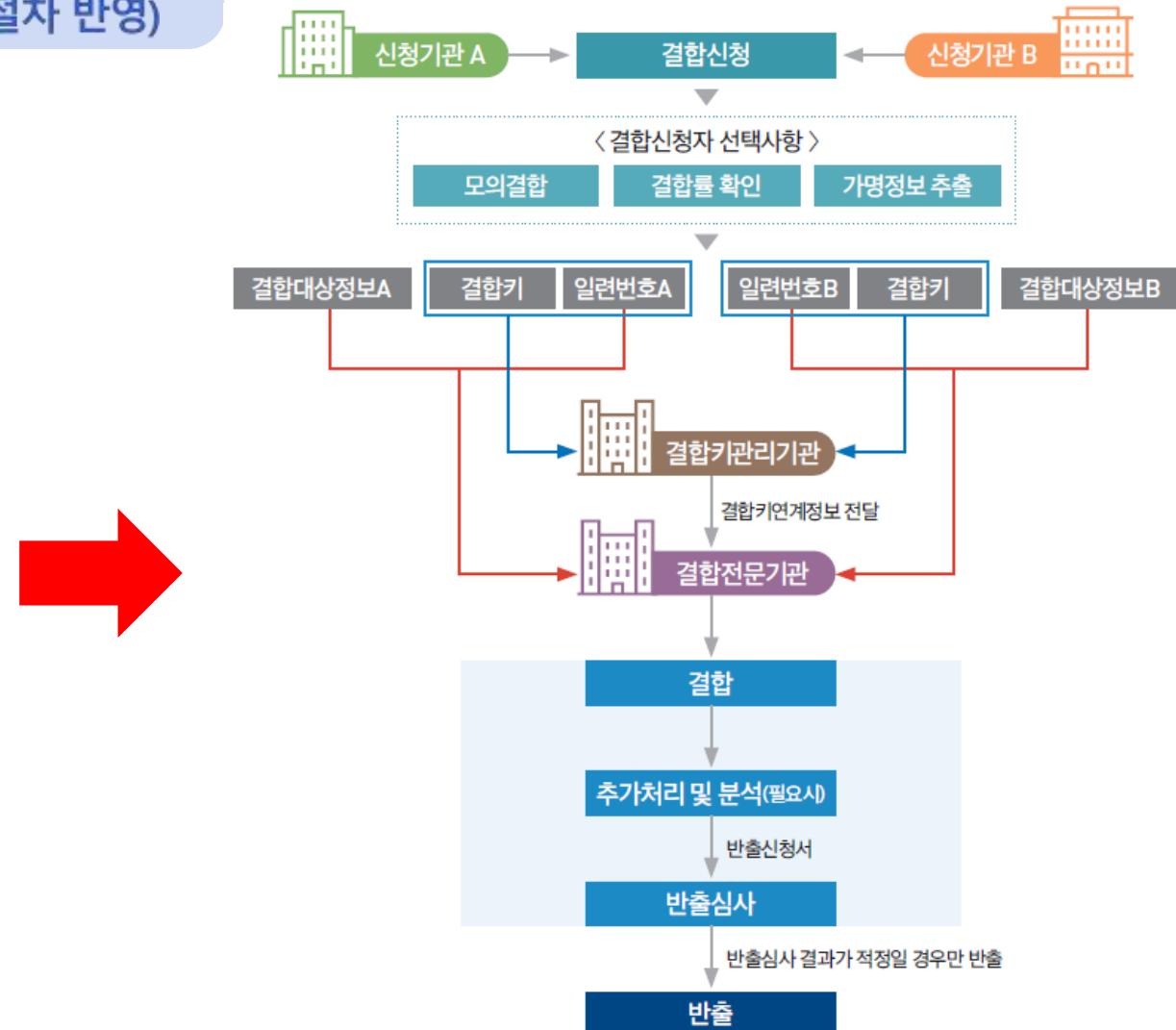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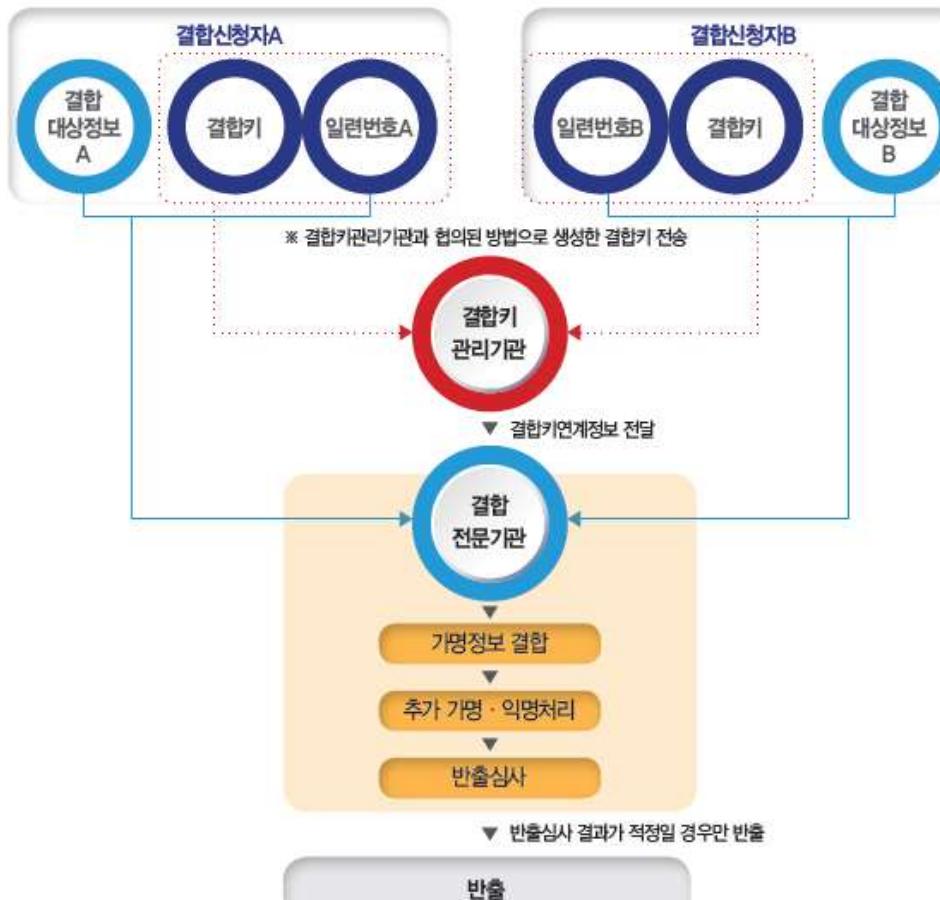
- ▶ 가명정보 처리 내부관리계획,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가명처리 관련 다양한 예시 추가 및 상세화
- ▶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자료 서식, 가명정보 처리 관리대장 서식 등 가명처리 관련 예시에 맞춰 다양한 서식을 추가 제시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변경된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 내용을 상세히 안내
-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시 추가된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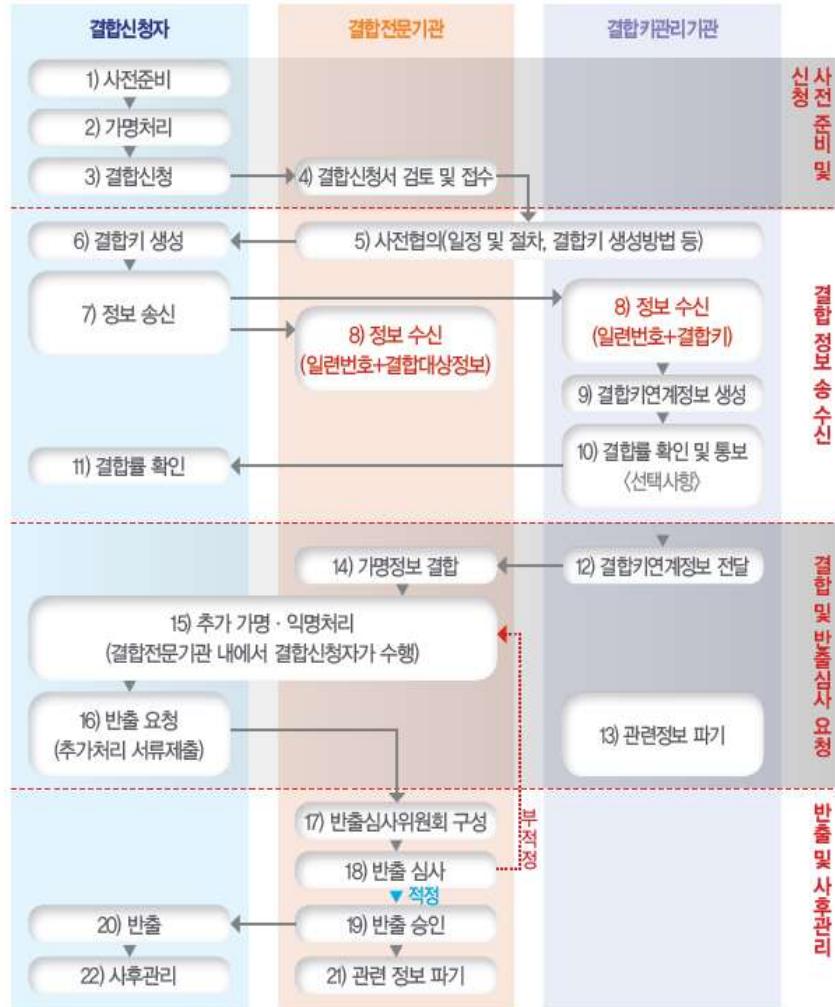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1] 결합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추가 절차 반영)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1] 결합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결합 절차 구체화)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절차	결합신청자	결합기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
1 사전준비 및 결합 신청	① 결합 신청	-	② 결합신청서 검토 및 접수 ③ 결합 일정·절차 등 협의(결합신청자)
1. 결합키 생성	① 결합키 생성 협의 ② 결합키 및 일련번호 생성	② 결합키 생성 협의(Salt값 전송)	-
2. 모의결합 (선택)	① 결합키 전송 ④ 모의결합 대상 가명처리 ⑤ 가명처리된 모의결합대상정보, 가명처리내역 및 결합키 전송 ⑥ 모의결합된 정보 분석 (결합전문기관 내) * 반출 제한	② 모의결합 가능성 검토 및 통지 ③ 모의결합 대상 결합키 선택 및 전송 ④ 가명처리 수준 검토 (필요시 추가처리 요청) ⑦ 모의결합 수행	-
2 결합 수행	③ 결합률 확인(선택)	③ 결합률 측정 및 통보	-
3. 결합률 확인(선택)	① 결합키 및 일련번호 전송 ④ 결합률 확인	②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률 확정	-
4. 가명정보 추출(선택)	② 결합키 및 일련번호 전송 ② 추출 요청	③ 추출 가능 여부 검토 및 통지 ④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 선정 및 전송	-
5. 가명처리 및 검토	① 결합대상정보 확정 ② 가명처리 ③ 가명처리된 결합대상정보, 가명처리 내역 및 일련번호 전송	-	★ 가명처리 지원(가능한 경우) ④ 가명처리 수준 검토 (필요시 추가처리 요청)
6. 결합	① 결합키 및 일련번호 전송	②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및 전송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기 포함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기 포함	③ 결합키연계정보 수신 및 가명정보 결합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기 포함
7. 추가 처리 (필요시)	① 결합된 정보의 추가처리 및 분석(결합전문기관 내) * 결합전문기관에 지원 요청 가능	-	★ 추가처리 및 분석 지원 (가능한 경우)
8. 추적 및 반출	② 반출	④ 결합기 및 결합기연계정보 파기(필요시 유지)* * 반복결합의 경우 결합키 생성방법(Salt) 반복결합기 생성방법(Salt) 보관	②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③ 반출 승인 및 결합정보 반출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기 포함 ④ 결합기연계정보 파기
9. 활용 및 시후관리	✓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 가명정보 처리 내역 기록·보관	-	★ 반출한 정보 분석 지원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공 (가능한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1] 결합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모의결합)

2. 모의결합(선택사항) * 결합전문기관이 지원가능한 경우

- 모의결합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함

※ 단,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대상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이 가능한 경우 모의결합대상정보를 선정하여 해당 결합키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함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합의 유용성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모의결합대상정보를 선정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해당 모의결합대상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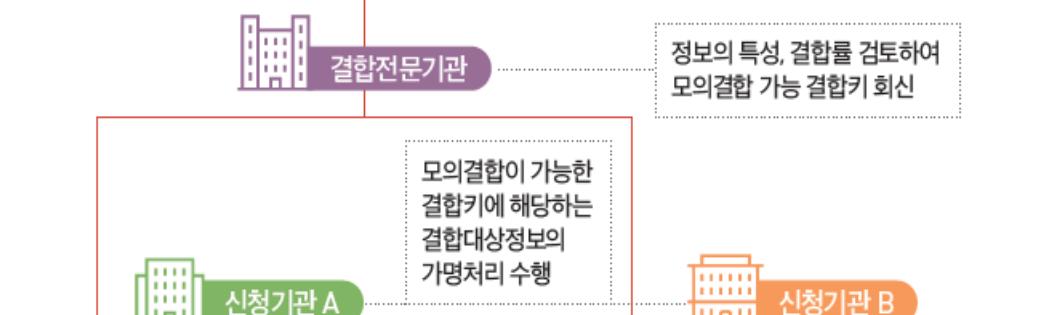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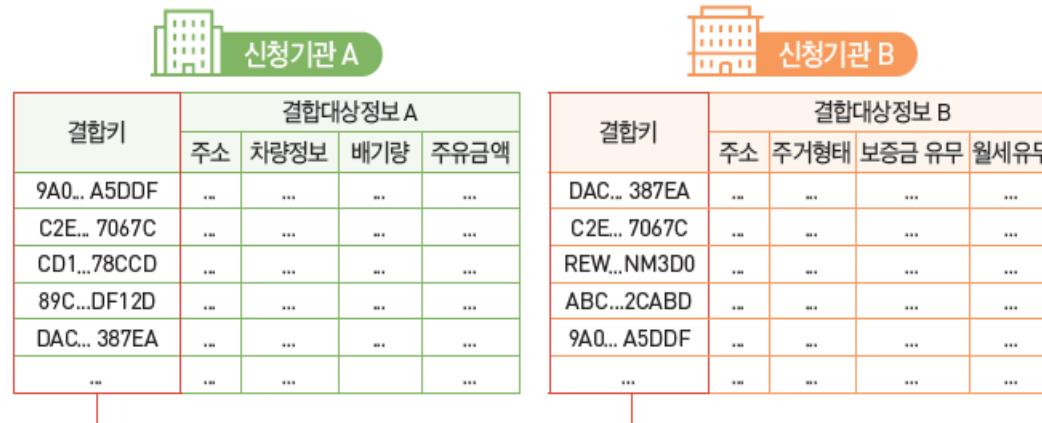
-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보완 사항이 없으면 결합키를 사용하여 모의결합대상 정보의 결합을 수행함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모의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결과물 및 모의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수 없음

※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분석 결과에 따라 결합의 진행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모의결합에 사용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This table shows the results of the simulated processing for the selected combination keys. It maps the specific data from the third-party service's table back to the government agencies' tables, showing the processed information (e.g., 서울, 그랜저, 2500c, 70,000) against the original keys (9A0.. A5DDF, C2E.. 7067C, CD1..78CCD, 89C...DF12D).

결합키	모의결합대상정보 B			
	주소	주거형태	보증금 유무	월세유무
9A0.. A5DDF	서울	아파트	유	무
C2E.. 7067C	경기	빌라	가명처리	무
9A0.. A5DDF	서울	주택	무	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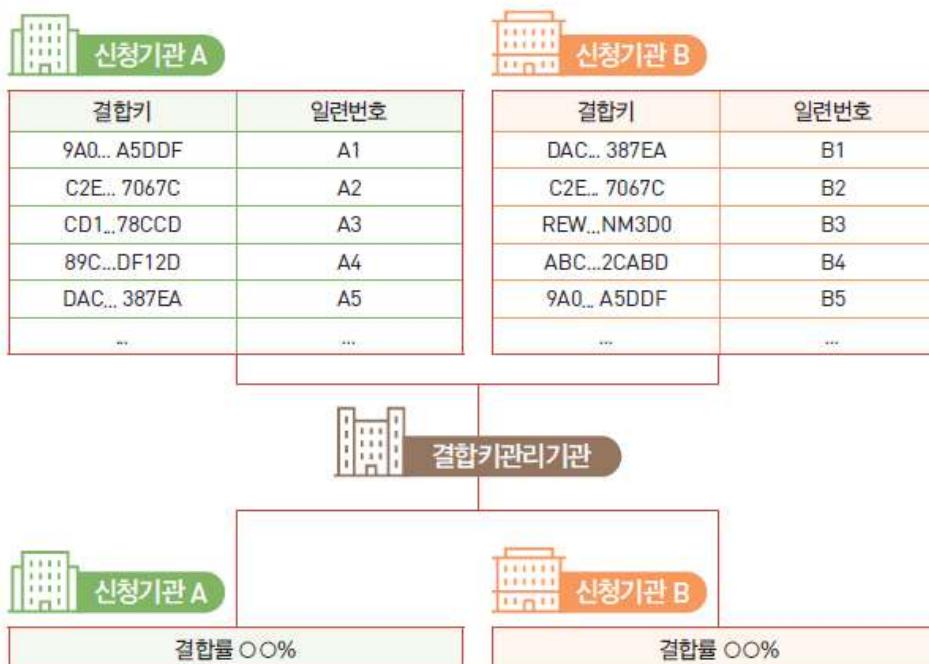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1] 결합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반영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3. 결합률 확인(선택사항)

- 결합률 확인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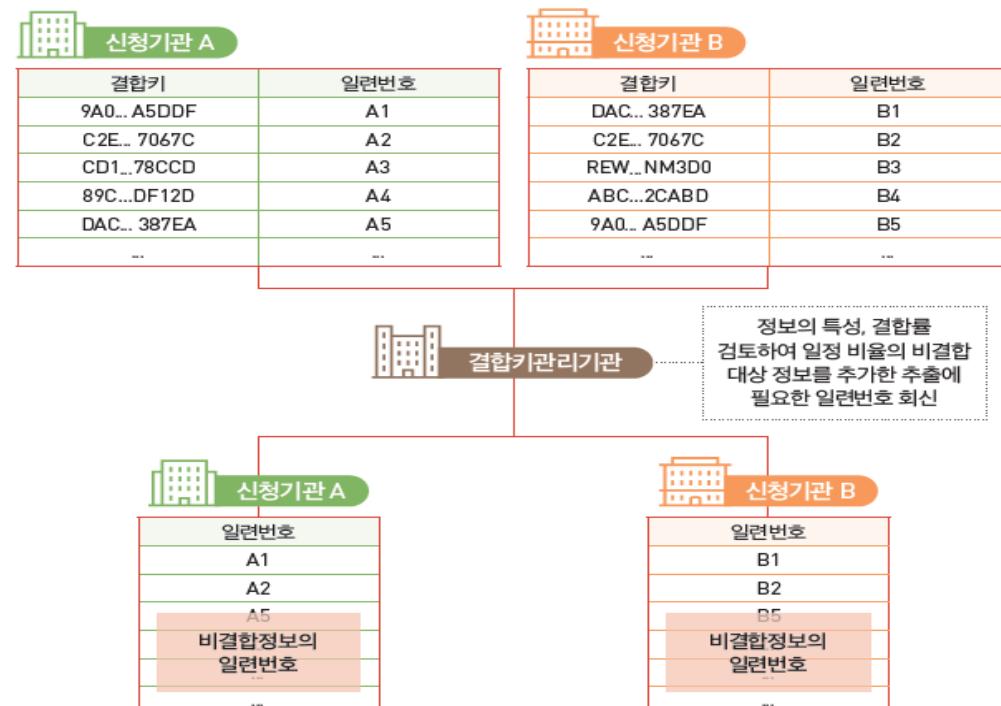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결합률을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함

※ 결합신청자는 결합률 확인 후 결합의 진행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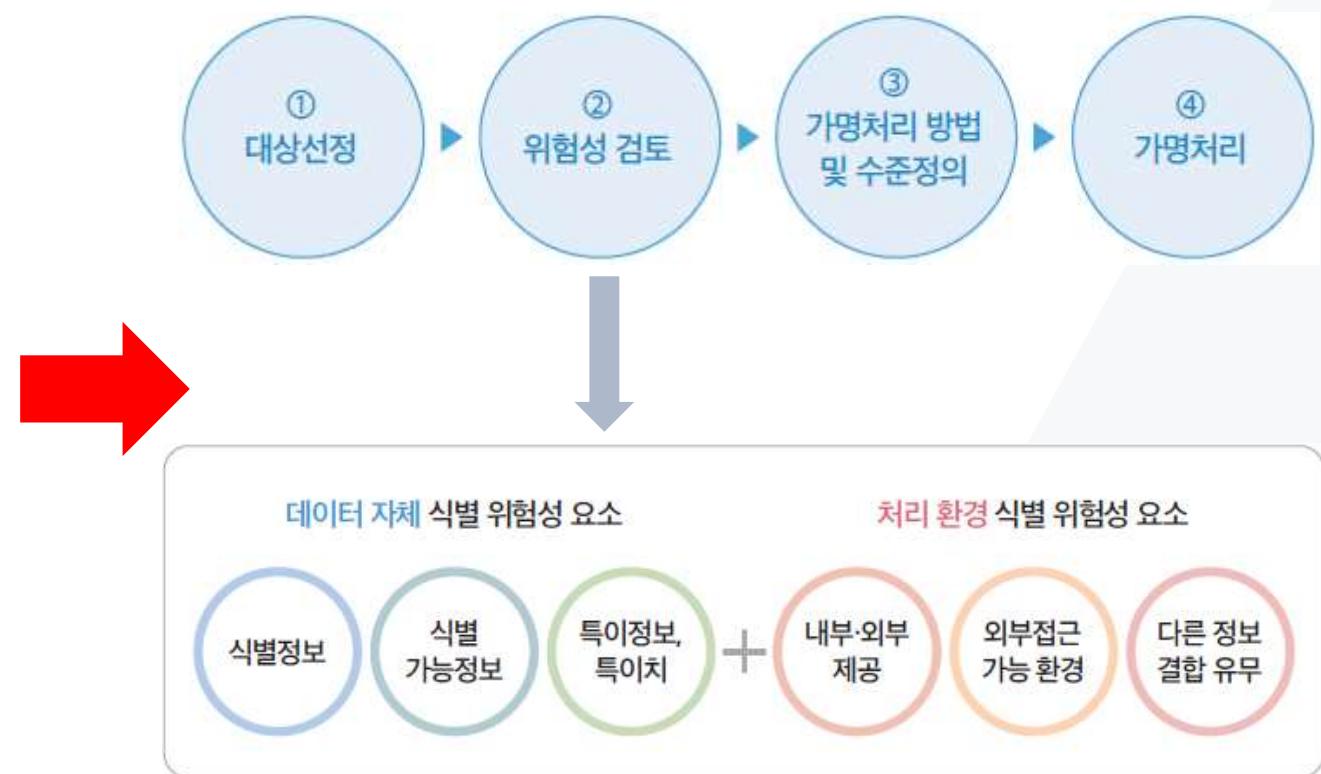
4. 가명정보 추출(선택사항)

- 가명정보 추출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함
- 결합키관리기관은 추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결합 목적 등)를 결합신청자로부터 제공받아 추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출이 가능한 경우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
 - 추출 가능성 검토 방법: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대상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추출 가능 여부를 검토
 - 추출 대상 선정 방법: 결합키관리기관은 모집단의 크기,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일정 비율의 결합되지 않는 정보(비결합대상정보)의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선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2] 가명처리 위험성 검토 항목 구체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2] 가명처리 위험성 검토 항목 구체화 (데이터 자체 위험성 검토)

1)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검토

- 데이터 자체 위험성 검토는 가명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식별될 위험이 있는 항목, 다른 항목과 결합을 통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그 밖에 특이정보, 특이치 등이 있는지 검토
 - (이용 항목별 식별 위험)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과 고유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음

<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예시) >

▶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식별을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 식별가능정보

- 성별, 연령(나이), 거주 지역, 국적, 직업,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다른 이용 항목과의 결합 유무) 단일 이용 항목으로는 식별 가능성이 없으나, 가명처리 대상이 되는 다른 이용 항목과 결합하여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용 항목이 있는지 검토
※ 지역-직업-나이, 직장-직위 등
- (특이정보, 특이치 유무) 가명처리 대상 전체 데이터에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고유(희소)한 값이 있는지, 편중된 분포를 가지는 단일·다중 이용 항목이 있는지 검토

< 특이정보(예시) >

▶ 특이정보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2] 가명처리 위험성 검토 항목 구체화 (처리 환경 위험성 검토)

2) 처리 환경의 위험성 검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 등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별 위험성 검토
 - (내부이용 및 외부제공 여부) 처리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와 이용 범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 처리 주체가 보유, 접근,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 가능성 검토 가능
 - (처리장소) 가명정보가 해당 가명정보 외에 다른 정보의 접근·입수가 제한된 장소에서 처리되는지 검토
 - ※ 다만,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으로 내·외부 정보의 활용이 제한된 경우 폐쇄 환경에 준하여 검토 가능
 - (다른 정보 결합 유무)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 분석할 예정인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내부 결합 할 예정인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를 반복 제공할 예정인 경우 반복 제공을 통해 식별 위험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 이용 및 제공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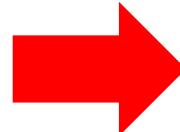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3] 가명처리 관련 예시 및 서식 추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가명정보처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예시)〉

- 가.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 다.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가명정보처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 사.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참조



〈가명정보 처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예시)〉

- 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
- 다.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에 관한 사항
- 라.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 아.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참조

참고7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제00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명)는 가명정보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로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명 또는 직책)로 정한다.

②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3.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현황 관리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5.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관련 기록 관리
6.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위탁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해당 시)
8.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모니터링 및 재식별 시 처리 방안의 수립·시행
9. 그 밖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제00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① 가명정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가명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인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논리적으로 분리·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제00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①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3] 가명처리 관련 예시 및 서식 추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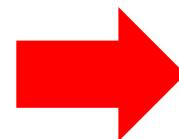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구분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재제공 또는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었거나, 재식별 가능성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위탁자에게 통지 의무 명시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특수조건 반영 사례(예시)〉

제○○조(재식별 금지)

- ①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은 “○”, 제공한 기업은 “△”로 표시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구분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	가명정보를 위탁받은 범위 외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사항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가명정보를 위탁하는 목적과 범위에 대한 사항
재위탁 제한	재위탁 가능한 범위에 대한 사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추가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관리·감독사항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었거나, 재식별 가능성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위탁자에게 통지 의무 명시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특수조건 반영 사례(예시)〉

제○○조(재식별 금지)

- ①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은 “○”, 제공한 기업은 “△”로 표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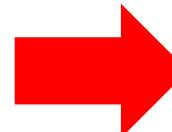
[주요 개정사항 3] 가명처리 관련 예시 및 서식 추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예시))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예시)〉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사례(예시)〉

제00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명)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는 재식별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구분	수집·이용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	연령대별 △△ 등 분석	휴대전화번호, △△일시, △△유형	결합데이터 분석 원료시까지

가명정보 처리 관리대장 (파일명 예시)

구분	내용	관련 파일명
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① 책임자: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가명처리 일시: ④ 이용방법: ex) 목적의 이용, 내부이용, 외부제공, 내부 결합,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등	
④ 제공받는 자 (제3자 제공사)		

- 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기재(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② 가명처리의 대상이 된 이용 항목을 말함(예: 성별, 나이, 주소 등)
- ③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책임자,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를 처리하는 자(필요시 처리자 명단), 가명처리한 일시, 가명정보의 이용방법(목적의 이용, 내부이용, 외부제공, 내부 결합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등)
- ④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명칭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3] 가명처리 관련 예시 및 서식 추가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서식)

통계작성 계획서		과학적 연구 계획서		공익적 기록보존 계획서	
통계명		연구명		공익적 기록보존명	
대표 참여진	소속 담당자명	연구진 연구책임자	소속	대표 참여진 (기록보관 기관)	보관기관명 담당자명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및 목적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통계작성 대상자 수		예상 연구 기간		보존기간	
통계작성 계획 및 방법		연구 대상자 수		공익적 기록보존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 방법		내용	
불임: 상세 통계작성 계획서 등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불임: 상세 계획서 등	
불임: 상세 연구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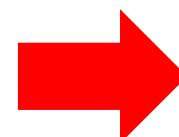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4] 결합▪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개인), A사, B사가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총길동의 신청서 (예시)》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A-20200900-001-3
결합신청자			
기관명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1000-00-0000 * 생년월일 기재
주소	00시 00구 000	대표자명	해당없음
담당자	총길동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010-0000-0000 abc@0000.00.00
신청자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기밀정보 제공		해당없음 []	
파일명	2019년도_종합		
제공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제출예정일	2020년 9월 00일		
전체 기밀정보 제공 기관명(총수)	총 2개 : 총길동(2019년도_종합), A사(파일명) ■ 결합신청자 B사는 별도의 기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활용만 함		
제공정보 요약	킬럼 수	25개	
	전체 레코드 수	10,500개	
	전체 파일 크기	00mb	
결합 결과물 이용		해당없음 []	
시계열 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시계열(신규) <input type="checkbox"/> 시계열(추가) 결합접수번호 : _____		
결합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결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00일			
신청인 총길동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관의 장 구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 결합 대상 기밀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기밀처리 대상 항목명, 기밀처리 기법 및 예시 등) *부여당 경우에 한함 * 결합기 생성에 사용된 소스 제외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인천조치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결합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제공+결합정보 이용 <input type="checkbox"/> 결합정보 이용		② 신청번호	
		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A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0	대표자명	000
담당자	총길동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010-0000-0000 00000@0000.00.00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결합 개요			
③ 반복결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결합접수번호 : _____)		
④ 추가절차신청	결합을 확인 [] 가명정보 추출 [] 모의결합 []		
⑤ 가명정보 제공자			
파일명	abc		
제출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제출 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제공정보 요약	파일 크기(0.00B) 전체 레코드 수(000,000개) 모의결합 레코드 수(000개)		
전체 가명정보 제공자명(총수)	총 2개:A사(파일명: abc), B사(파일명: zyx)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결합 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⑥ 결합정보 이용자	해당없음 []		
결합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 결합 목적	구체적 목적 설명		
분석공간 이용	<input type="checkbox"/> 추가 가명처리만 수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합정보 분석 <input type="checkbox"/> 이용안함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반출 전 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결합신청자		총길동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관의 장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자에 한함) 3. 결합 대상 기밀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기밀처리 대상 항목명*, 기밀처리 내역 등*) 1부(기밀정보 제공자에 한함) * 결합기 생성에 사용된 항목 제외 ** 결합대상 정보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4] 결합▪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① 결합신청서 작성

- (작성 주체) 결합신청서는 결합신청자*별로 각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기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현재 기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처리할 예정인 개인정보처리자

- 작성자가 해당되는 결합신청자의 유형(기명정보 제공, 기명정보 제공 및 결합정보 이용, 결합
정보 이용) 표기

② 신청번호 및 접수번호

- (신청번호) 결합신청자 중 대표자*가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을 통해
발급받은 번호

* 결합 신청에 있어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할 결합신청자

- (접수번호) 결제출된 결합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는 번호, 결합신청서 제출 시 공란으로 제출

③ 반복결합

- 추후 동일한 목적/형태 등으로 추가적·반복적 결합을 수행하는 경우

- (최초) 반복결합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최초 반복결합이 완료된 이후 반복결합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최초 반복결합 신청시 발급
되었던 결합 접수번호 기재

④ 추가절차 신청

- 결합률 확인, 추출, 모의결합*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체크(증복체크 가능, 선택사항)

* 모의결합의 경우 결합전문기관별로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결합전문기관이 모의결합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필요

⑤ 기명정보 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

- 결합을 위해 기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가 작성하며, 기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란

- 기명정보 파일명, 제출 방법, 제공 정보 요약, 전체 기명정보 제공자명(총수)*,
지원 요청 사항** 등 작성

* 해당 결합을 신청하는 기명정보 제공자의 전체 기관명 및 전체 기관수(총 ○개)

**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기명정보 제공자는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전 가명처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여부 확인 필요)

⑥ 결합정보 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현재 기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포함)가 작성하며, 기명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공란

- 결합 목적, 분석공간 이용여부*, 지원 요청 사항(증복체크 가능)** 작성

*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리를 활용하여 추가처리 및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사항) 체크

** 결합전문기관에 결합된 정보에 대한 반출 전 가명·익명처리, 결합된 정보를 분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 사항란 표시(이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여부 확인 필요)

⑦ 첨부 서류

- 각 첨부 서류별 제출 주체는 아래와 같으며, 기명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결합된 정보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첨부 서류 제출 필요

- 첨부 서류는 결합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합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합률 확인
기명정보 추출 등 모든 사전절차 완료되어 결합 대상이 확정된 이후 결합 대상 기명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의 가능

	기명정보 제공자	결합정보 이용자
1.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	○
2. 결합 목적 관련 서류		○
3. 결합 대상 기명정보에 관한 서류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사항 4] 결합▪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① 반출신청서		② 반출접수번호 결합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	대표자명
담당자	송길동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③ 결합 유형		
반복결합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
④ 반출 개요		
파일명	cclab	
반출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경의적 기록보존 등	
세부 반출 목적	구체적 목적 설명	
반출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명정보 <input type="checkbox"/>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	
제공 받는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input type="checkbox"/>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공간	
지원 요청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출된 정보의 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3항·제6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기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자	송길동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⑤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반출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반출신청서 작성

- (작성 주체) 결합된 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고자하는 자는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와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의 분석공간에서 분석만을 수행하는 자는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② 반출접수번호 및 결합접수번호

- (반출접수번호) 결합전문기관이 제출된 반출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는 번호, 반출신청서 제출 시 공란으로 제출
- (결합접수번호) 결합전문기관이 제출된 결합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였던 번호

③ 결합 유형

- 반복결합을 신청한 자는 최초/추가 여부를 체크하며, 반복결합이 아닌 경우 공란

④ 반출 개요

-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는 파일명(반출할 결합 결과물), 반출 목적, 반출정보 유형 등을 작성

※ 결합신청자는 반출심사 전인 경우 결합 목적과 반출 목적 변경 가능

- (반출정보 유형) 반출을 신청하려는 자가 정보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명 또는 익명으로 판단하여 표기

- (제공받는 방법) 결합전문기관등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는 온라인, USB등 저장장치를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는 오프라인,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분석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표기

- (지원 요청사항) 정보의 분석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면 표기

⑤ 첨부 서류

-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

-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 분석공간을 통해 추가 가명처리가 수행되어 반출 대상 정보가 당초 제출한 결합 대상 가명정보와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반출 목적 관련 서류) 반출 목적이 당초의 결합 목적과 달라진 경우(결합 목적과 반출 목적의 양립 가능성 검토 필요)만 제출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안전조치 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 운영 지침 등 반출정보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감사합니다

